

금융투자소득 합산과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거소)	④ 전화번호	

(년 귀 속) 합산과세 신청 소득금액 내역

(단위 : 원)

⑤원천징수한 금융회사명	⑥사업자 번호	⑦계좌 번호	⑧금융투자소득 상세구분	⑨국내/ 국외	⑩증권 표준코드	⑪금융투자 상품명	⑫합산과세신청 소득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 제24조제14항

[] 제24조의2제6항

[] 제81조의4제5항

[] 제82조의2제6항

[] 제83조제12항

[] 제92조의13제10항

[] 제93조의3제9항

에 따라 금융투자소득 합산과세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2(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27조(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87조의7(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88조의2(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제89조(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제91조의14(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또는 제91조의17(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지 않고 「소득세법」 제87조의4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 금융투자소득 합산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의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⑧ 금융투자소득 상세구분란: 「소득세법」 제87조의6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을 구분하되 다음의 해당하는 상세코드를 적습니다.

구분	주식등(10)						채권등(20)						투자 계약 증권	집합투자기구 (40)		파생결합증권(50)								파생상품(60)					
	상장			비상장			국 채	지 방 채	특 수 채	회 사 채	외 국 채	기 타		공모 국내 주식형 적 격 집합 투자기구	그 외	E L W	E L S	D L S	E T N	골드 뱅크	실버 뱅크	기 타	선 물	선 도	스 왑	콜 옵션	풋 옵션	C F D	기 타
	코스 피	코스 닥	코넥 스	K-OTC 거래		그외																							
중소·중견기업	그외																												
코드	11	12	13	14	15	19	21	22	23	24	25	29	30	41	49	51	52	53	54	55	56	59	61	62	63	64	65	66	69

- ⑩ 증권표준코드란: 한국거래소(비상장 집합투자기구인 경우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부여하는 금융투자상품의 종목코드를 적습니다(표준코드12자리). 종목코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증권등 발행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국외증권의 경우 국제증권식별번호(ISIN코드)를 적으며 동 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 발행법인 소재의 국가코드를 적습니다.